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 관리업무매뉴얼

2019. 9. 27.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목 차

I.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기준	3
1. 산림기술용역업의 이해	3
II.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6
1.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처리과정	6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6
3.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절차별 처리방법	7
III.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업무개요	17
1. 산림기술용역업 변경 업무의 이해	17
2. 주요 업무	17
IV.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처리절차	18
1.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처리과정	18
2.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18
3.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절차별 처리방법	19
V.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26
1.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업무의 이해	26
2.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 처리과정	26
3.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 구비서류	26
4.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 절차별 처리방법	27
VI.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담당자	3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무흐름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서 접수

(기술인회 처리기간 30일)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 등록



용역업 등록증 및
수수료 고지서 발급요청



용역업 등록증,
수수료 고지서 교부

주요 조치할 사항

- 등록(자격)요건확인 (등록신청 구비서류상)
 -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농림)사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기번호, 소재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 소재지 확인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산림청에 요청)
 - 기술자 중복등록 조회(시스템 중복등록통합조회)
 -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력 고용 여부 확인
 - 시스템 산림기술자 조회를 통해 자격 상태 및 진위 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명부 확인
 - 사무실 적격 여부 확인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산림사업법인등록 → 법인등록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등록번호 부여
 - 부여된 등록번호로 용역업 등록증 제작
-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고지서 납부 대상업체 목록, 용역업 심사결과 첨부하여 용역업 등록증 및 수수료납부고지서 발급요청(기술인회 → 산림청) 결재상신
-
- 등록증, 수수료 고지서 발송 (아래의 서류 첨부)
 - 등록증 발급 알림 공문
 - 수수료 납입 고지서
 - 용역업등록증

1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기준

□ 산림기술용역업의 이해

-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함
-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업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자를 말함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별표 4][시행 2018. 11. 29.]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 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전문업	산림 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산림 생태 · 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 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 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 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학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 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임도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진 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사방사업 4. 산지의 보전·이용, 토 석채취 및 재해방지·복 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림복원사업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 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 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 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 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 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 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 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 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 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 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 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 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 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 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림등 조성사업

	<p>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p> <p>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p> <p>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p>			
--	--	--	--	--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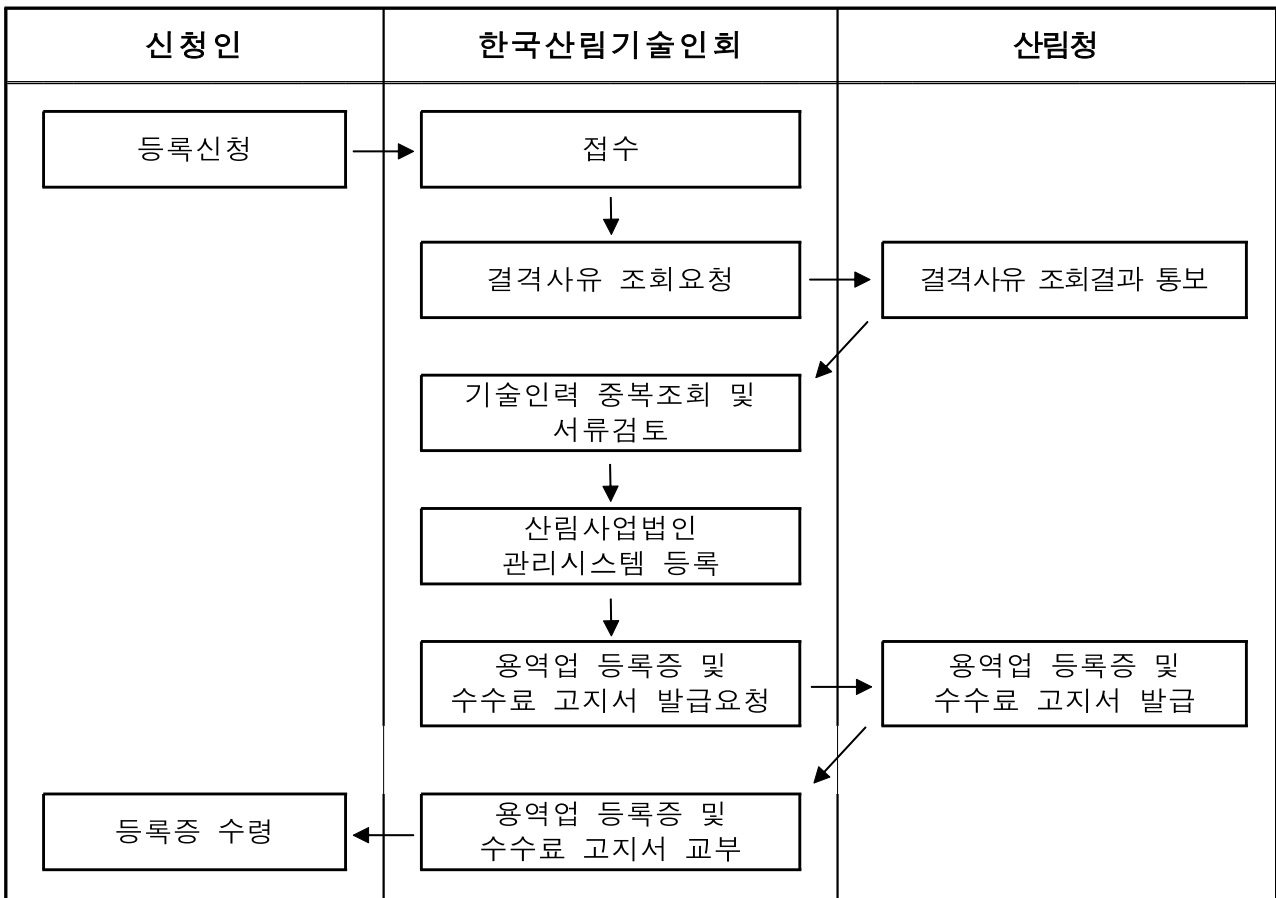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처리 과정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업체 신청 결격사유 조회	→	등록요건 검토 및 결재	→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증 교부
2 - 3일		3 - 4일		3 - 4일		1 - 2일
기술인회/산림청		기술인회		기술인회/산림청		기술인회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 법인 또는 개인 (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 <붙임 1> 참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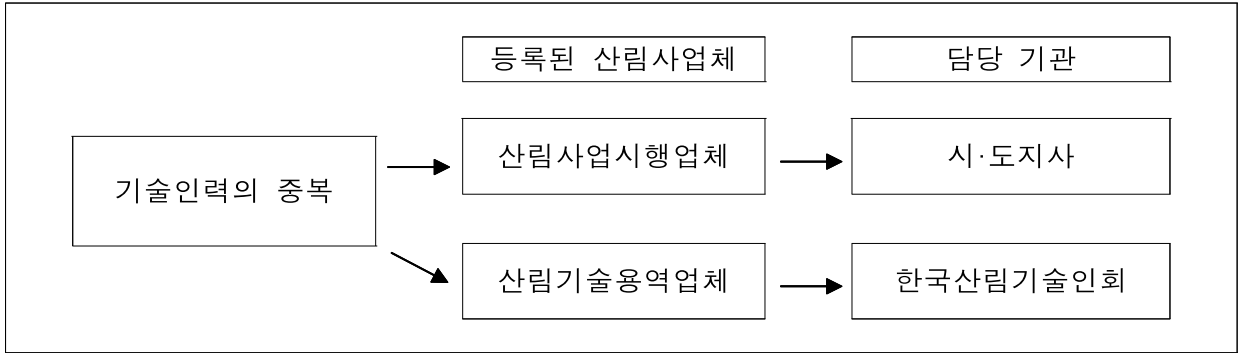
- 녹지조경 기술자 자격증 사본
 - 녹지조경기술자가 대표자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 <붙임 2> 참고, 한 장으로 별도 작성
 -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결격사유조회시 필요
 - 용역업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만 기재
 - 용역업 등록을 위해 기술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까지 기재
- 기술인력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존 산림기술자 1급 2급인 경우→ 산림기술자 1급, 2급 자격증 사본과 경력확인서 첨부 가능
 -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법인일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권한 미부여로 인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첨부토록 해야 함
-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
- 종합업 신청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첨부
 - 법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절차별 처리방법

- 결격사유 조회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업체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유무 조회
 - 업체 대표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필요
 - 결격사유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권한 미부여로 인해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산림청에 공문으로 요청
 - 관련법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결격사유)

○ 기술인력 중복조회

-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 산림기술자 중복등록 통합조회 이용
-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등록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중복조회 : 중대한 결격사유이므로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서 반려
- 관련법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기술인력이 산림사업법인(시행업)에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등록신청 업체에 기술인력 중복등록 불가 안내 및 기술인력이 등재되어있는 해당 업체에 지자체 또는 광역단체에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토록 안내
- 기술인력이 산림기술용역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신청업체에 기술인력의 중복등록 불가 안내와 기술인력이 등재되어있는 해당업체에 한국산림기술인회로 용역업 변경신고서 제출토록 안내

○ [종합업] 또는 전문업종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등록 신청

- 산림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 신고증 사본 첨부 확인
- [녹지조경] 신청자의 경우 녹지조경기술자 기술고급 이상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 등록신청서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사무실 주소지 일치 확인

-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기번호, 소재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 소재지 및 산림사업등재여부 확인

○ 산림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의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의 고용 여부 확인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산림기술자자격증 조회를 통해 자격진위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통해 고용현황 확인

○ 사무실 적격 여부 확인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기간 및 사무실의 용도, 공중여부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및 사무실 용도확인
 - (1·2층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가 점포, 사무실 등)
-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이 구비 되어 있는 사진(외부 전경 및 실내)을 첨부하면 사무실 인정 가능
- 사무실의 적격여부 판단 기준은 산림사업법인관리지침 제5조를 적용함
 - <붙임3> 참고
 - 관련법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http://fec.forest.go.kr>)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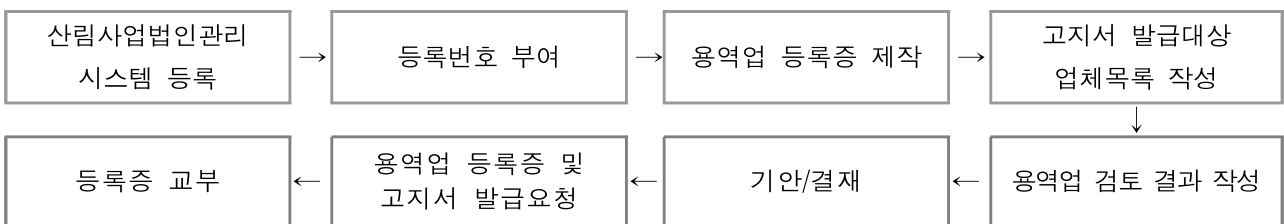
- 결격사유 조회, 기술인력 중복조회, 사무실 및 서류검토 결과 적격인 업체에 대해서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에 등록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등록절차



-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고유관리번호(등록번호) 자동 부여

○ 용역업 등록증제작, 수수료 고지서 납부대상 목록 작성 및 발급요청

- 부여된 등록번호와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업 등록증 제작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과정



- 용역업 등록, 변경신고, 재발급 신청 건에 대해 수수료납부대상 목록 작성
- 산림청에 용역업 등록증 및 수수료 고지서 발급요청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수수료납부 고지서 교부(기술인회)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알림 공문 첨부
- 수수료 고지서

- 산림기술 용역업의 등록 업무 민원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 「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산림기술용역업 등의 수수료 (제22조 관련)

신 청 내 용	수 수 료
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3만원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5천원
다.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1만2천원
※ 납부방법 ○ 현장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방문하여 납부 ○ 인터넷 납부방법 : - 은행(인터넷뱅킹) : 공과금→ 국세→ 기금,기타국고납부→ 전자납부번호 조회 - 지로(giro.go.kr) : 조회납부→ 국고금→ 기금,기타국고→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일 경과 후에도 수납 가능	

— 담당자의 업무 Tip —

- 용역업 등록증 작성시 업체가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는 참고만 하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
- 용역업 등록증의 업체명은 신청서의 업체명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 (사업자등록증과 용역업등록증상의 업체명이 다를 경우 조달청 등록 불가)
- 산림청에서 수신된 결격사유 조회결과는 해당 신청서류에 첨부하고, 우편접수시 우편 봉투도 서류에 첨부
- 자격증과 동시 신청일 경우 자격사항은 총괄표에서 확인(기술고급 이상) 후 출력해서 첨부
- 용역업 등록증 정보 오기 또는 오타로 인한 재발급은 결재받지 않고 산림청에 직접 요청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차기간이 끝나있고, 특약에 자동연장에 대한 내용도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요청
-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대차 계약서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되었는지 확인

자주묻는 질문

Q :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법인 업무는 누가 처리하나요?

A : 산림사업법인 : 시도지사(기존 동일)

산림기술용역업 : 산림청장(한국산림기술인회에 업무 위탁)

Q : 산림사업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로 산림기술용역업도 등록 가능한지?

A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해서는 안되며, 또한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으로 등록된 산림기술자 자격증 이외에 용역업 수행을 목적으로 상시근무하는 전담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용역업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Q : 산림기술자 기술 고급 1명으로 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A :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업별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으며,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는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내지 않고 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A :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산림분야(농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내지 않고 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첨부 하는 경우 또는 전문업종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녹지조경자격증 첨부)만 해당 합니다.

- 관련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Q :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등재된 기술인력으로 용역업도 등록 가능한지?

A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견 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i>(법인인 경우) 숲사랑엔지니어링 (법인)</i> <i>(개인사업자인 경우) 숲사랑엔지니어링 (개인)</i> <i>(반드시, 상호 또는 법인명 뒤에 '법인/개인 중 해당사항' 을 기입)</i>		
	성명(대표자) 김숲	생년월일 1968.8.15	
	전자우편 forest@○○○.kr	전화번호 010-000-0000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i>(반드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입)</i>		
	분야 종합업: [] 종합 전문업: [√]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 사항	기술인력 총 1 명 (특급: 명, 고급 이하: 1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i>(전문업의 경우 등록 요건이 아니므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종합업 등록시에만 기입)</i>		
	사무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 <i>(반드시 사무실의 소재지 기입)</i>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신청인

김 숲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	뒤쪽 참조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붙임 2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한 장으로 별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자격	취득일	취득기관	용역업 등록
1	홍길동	123456-1234567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18.11.29	한국산림 기술인회	산림경영
2	임걱정	123456-1234567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18.11.29	산림청	산림생태공학
3						
4						

○ 작성요령

- 성명 : 용역업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 기재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홍길동(123456-1234567)
 - 주민등록번호는 결격사유 조회 시 필요
- 기술인력(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 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까지 기재
- 용역업 등록
 - 해당 기술인력을 등재할 전문업 기재
- 보유자격의 기술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기술1급, 기술2급)
 - 산림공학기술자(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기술1급, 기술2급)

○ 제5조(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 사무실의 범위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관할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 다음 각 호의 건물 중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사무실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사용되어야 한다.
 - 사무실은 다른 산림사업법인 또는 타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될 시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산림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 임차계약서로 공증하는 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 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1. 상호 또는 법인명:
-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 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5. 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립 청 장



변경사항(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기록자(인)

210mm×297mm[백상지(150g/㎡)]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업무흐름도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접수

(기술인회 처리기간 10일)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변경 등록



변경등록증 및 수수료 고지서 발급요청



변경등록증 및 수수료 고지서 교부



산림기술정보체계 홈페이지에 공고

주요 조치할 사항

-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확인
 -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기번호, 소재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 소재지 확인
- 대표자 변경신고 시
 - 결격사유 조회 (기술인회 → 산림청)
- 기술인력 변경신고 시
 - 기술자 중복조회
 -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중복등록통합조회
 -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력 고용 여부 확인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산림기술자 자격증 조회를 통해 자격 상태 및 진위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명부 확인
- 소재지 변경신고 시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산림사업법인등록 → 법인목록 → 해당업체 조회
 - 상세보기에서 수정
 - 수정후 변경사항에 기록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증 및 고지서 납부 대상업체 목록 서류 심사결과 첨부하여 변경등록증 및 수수료납부 고지서 발급요청(기술인회→산림청) 결재상신
- 변경등록증, 수수료 고지서 교부
-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중이므로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공고란에 공고

3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업무개요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 업무의 이해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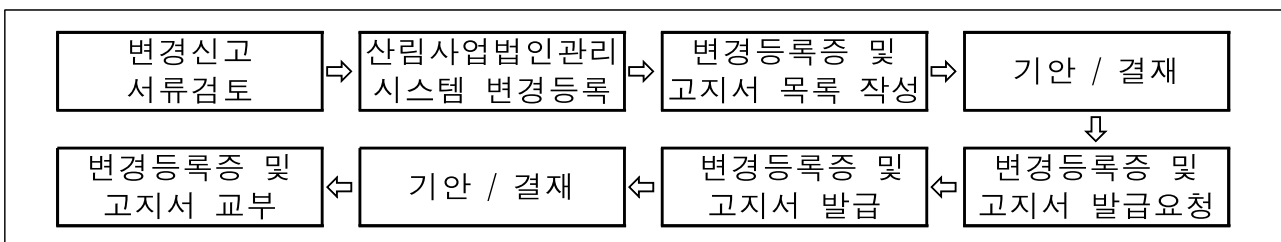
-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변경사항

-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 주요 업무

-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 건에 대해 변경등록 및 용역업 변경등록증, 수수료 고지서 교부
-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변경신고 건에 대해 변경등록 및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 내역 <붙임2> 작성, 수수료 고지서 교부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세부 업무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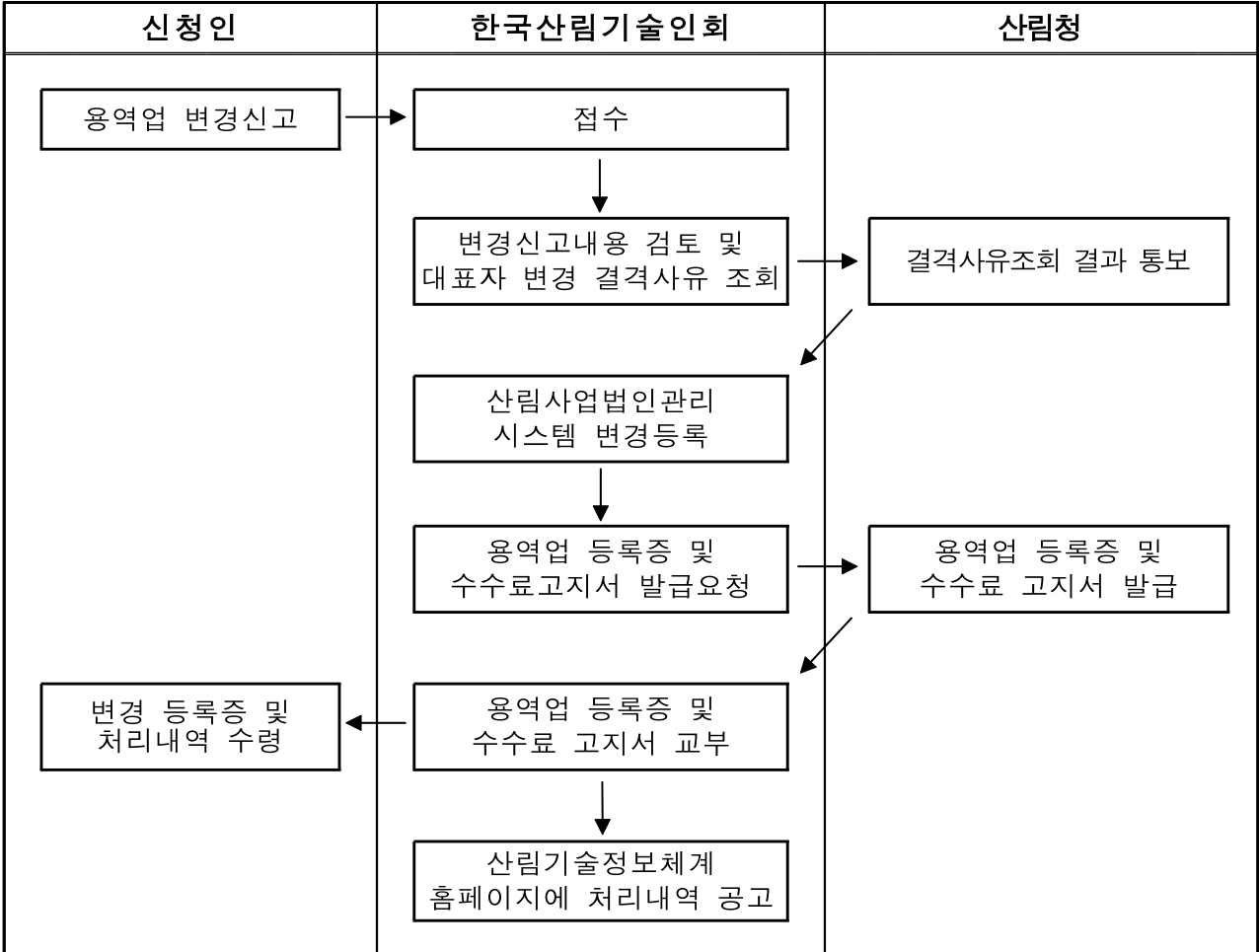
담당자의 업무 Tip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증 제작 시 등록날짜는 최초 등록날짜를 기입하고 변경일자는 등록증 아래에 변경사항(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에 기록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업체는 변경등록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해당 업체의 기본정보 및 기술인력의 재직·퇴직 여부 확인 가능
-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원본 첨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변경신고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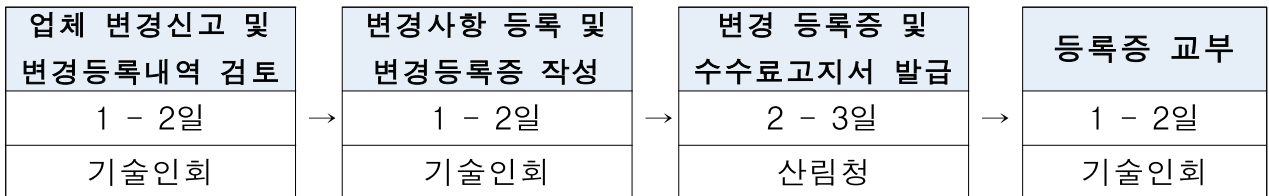
4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처리 절차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처리 과정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붙임 5>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붙임 5>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일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무실 외부 전경 및 내부 사진 (사무실 용도확인 불가일 경우)

○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붙임 5>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 기술인력변경의 경우 용역업 등록증에 변경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본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 변경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붙임2>
- 변경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절차별 처리방법**

○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검토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여부 확인, 변경 일시 확인
-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

○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검토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의 소재지변경 여부 확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사무실 용도확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 용도확인 불가일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사무실의 용도확인 및 소유주와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 사무실 용도확인 불가일 경우 사무실 외부 전경 및 내부 사진 첨부 요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검토사항

- 입사신고서 추가하는 기술인력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의 “산림기술자중

복등록 통합조회” 이용 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조회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등급 (기술 고급이상)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실제 고용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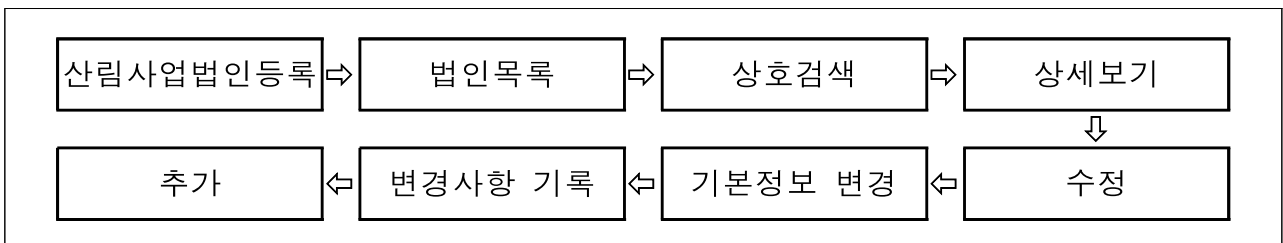
○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 변경신고시 검토사항

- 용역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전문업을 취소하고 다른 전문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
 - 기존에 이미 전문업이 등록되어있고 다른 전문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 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로 처리
-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전문업은 등록취소 후 변경되는 전문업으로 등록
- 전담 산림기술자가 변경된다면 중복등록 조회 후 시스템 등록
- 등록 절차는 산림기술용역업용역업 등록 참고
- 등록취소 절차는 용역업 폐업 참고
 - 취소사유구분은 “기타”로 선택 후 취소 사유는 전문업 변경으로 작성 후 입력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http://fec.forest.go.kr>) 변경등록

- 서류검토결과 적격인 변경신고 업체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등록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업체 변경정보 등록 및 변경 이력 관리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변경등록 절차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증 및 수수료 고지서 요청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증 및 수수료 고지서 교부 (명칭, 대표자, 소재지)
- 산림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등록내역 <붙임 6> 및 수수료 고지서 교부
- 변경신고 처리 내역에 대하여 산림기술정보체계(산림기술정보체계는 구축예정이므로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 처리내역 공고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공고 란에 공고
 - 변경처리내역 공고문은 <붙임 7> 참고

담당자의 업무 Tip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등록 시 기본정보 변경 후 변경사항에서 변경구분(명칭, 대표자, 소재지)중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변경내용이 입력되며, 변경내용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사항 입력내용과 변경된 기본정보 내용까지 한 번에 저장
-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보유기술인력 명부에 일일이 저장 후 변경사항도 따로 기록
- 기술인력 변경시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담 산림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담 산림기술자를 구하여 신고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휴업으로 변경하더라도 검색이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관리대장에 따로 표시

자주묻는 질문

Q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A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3.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Q : 대표자가 한 명에서 두 명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네. 대표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두 명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Q : 용역업에 등록 되어있는 전담 기술자(기술고급 이상)가 퇴사한 경우 다른 기술자를 구하여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A : 전담산림기술자의 퇴사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 터 30일 이내에 다른 산림기술자(기술고급 이상)를 고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Q : 30일 이내에 전담 산림기술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 30일 이내에 전담 산림기술자를 구하지 못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최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 발생일부 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 변경사유 발생일부 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 : 변경사항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림기술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6

산림기술용역업 기술자 변경등록 내역

산림기술용역업 변경등록 내역

□ 상 호 : 한국산림기술인회

등록번호	세부분야	상 호	대표자	변경 사항					비고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자격	성 명	기술자격	성 명	

※ 변경신고 유의사항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각 호(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대표 기술인력의 퇴사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긴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대체 기술인력을 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 산림사업법인(시행업)에 소속되었던 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이전 소속회사에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했는지 확인 후 용역업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타 산림사업법인에 기술인력으로 등재가 되어있으면 용역업 기술자로 등록 불가)

붙임 7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공고문

한국산림기술인회 공고 제2019 - 000호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변경신고 처리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한국산림기술인회장

1. 변경신고 내용

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연 번	업종 및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변경사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자격	성 명	기술자격	성 명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연 번	업종 및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변경 일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연 번	업종 및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변경 일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연 번	업종 및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변경 일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

업무흐름도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서 접수

(기술인회 처리기간 4일)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휴·폐업 등록



공고문 기안·결재



산림기술정보체계
홈페이지에 공고

주요 조치할 사항

- 휴·폐업 신고서 구비서류 확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휴업신고 처리
 - 산림사업법인등록 → 법인목록 → 해당업체 조회
 - 상세보기에서 휴업 상태 변경
- 폐업신고 처리
 - 산림사업법인등록 → 등록취소 → 입력하기
 - 등록번호 및 등록취소 사유 입력 후 확인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처리 내역 공고문 결재상신

-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중이므로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공고란에 공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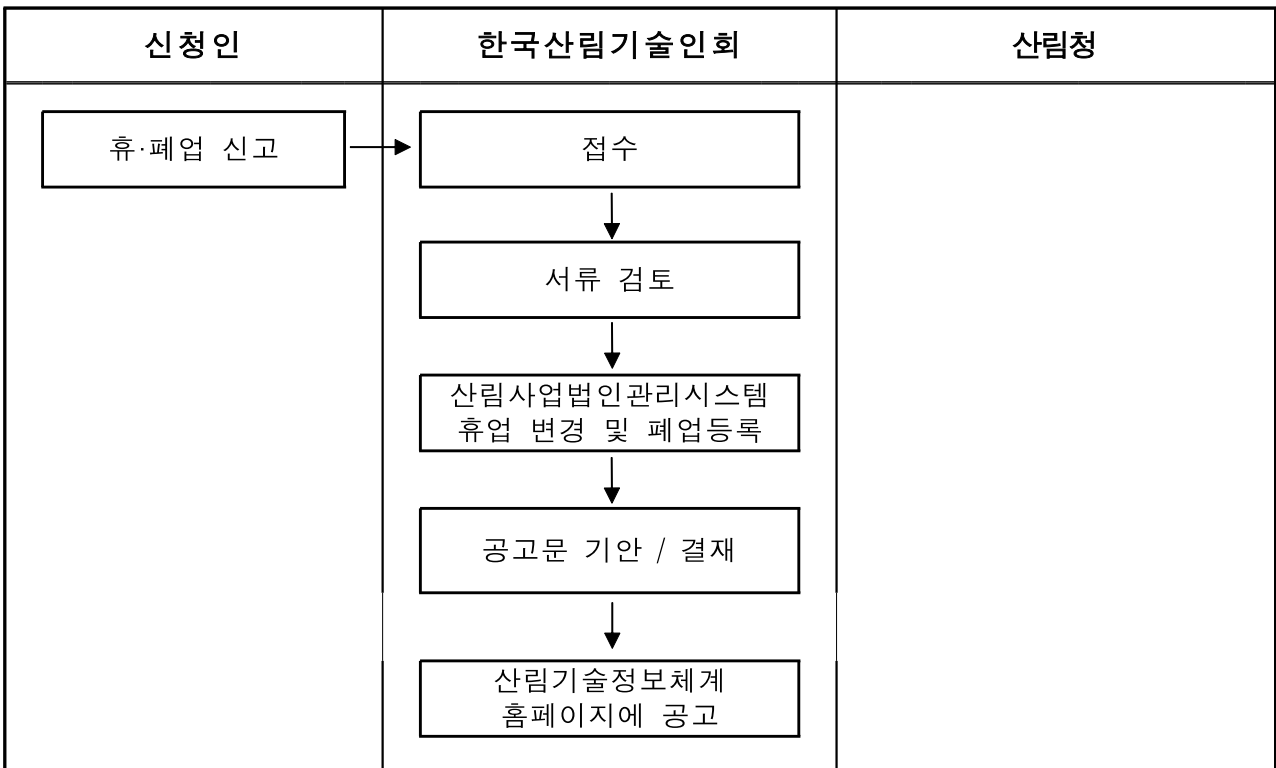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업무의 이해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 처리 과정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구비서류

○ 휴업신고시 구비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휴업사실증명원)

○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절차별 처리방법

○ 휴업신고

- 휴업신고서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휴업사실증명원) 확인
 - 산림사업체가 사업체 전체를 휴업하지 않고 용역업에 등록된 종합업 또는 전문업만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과 휴업신고서만 제출

○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확인
 - 산림사업체가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용역업에 등록된 종합업 또는 전문업만 폐업(등록취소)할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과 폐업신고서만 제출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http://fec.forest.go.kr>) 휴업 변경 및 폐업 등록

- 휴업신고시 산림사업법인등록 → 법인목록 → 해당업체 조회 → 상세보기 → 수정 → 영/휴·폐업 여부에서 “휴업”으로 상태변경
- 폐업신고시 산림사업법인등록 → 등록취소 → 입력하기 → 등록번호 검색 → 등록취소 사유 구분 선택 → 등록취소 사유 입력 → 확인

○ 산림기술정보체계 홈페이지에 공고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공고문 기안/결재 후 공고
 - <붙임9> , <붙임10> 참고

붙임 8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분야 종합업: [] 종합 전문업: []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신고내용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년 월)	폐업일	
	휴업·폐업 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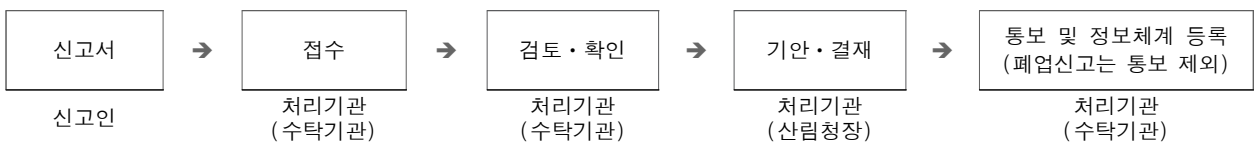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붙임 9**산림기술용역업 휴업 공고문**

한국산림기술인회 공고 제2019 - 000호

산림기술용역업 휴업신고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체의 2019년 00월 00일까지 휴업신고 처리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한 국 산 립 기 술 인 회 장

가. 처분내용 : 산림기술용역업 휴업

나. 처분대상업체

분 야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일자	소 재 지	휴업 내역	
					사유	휴업일자

한국산림기술인회 공고 제2019 - 000호

산림기술용역업 폐업신고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체의 2019년 00월 00일부터 2019년 00월 00일까지 폐업신고 처리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한 국 산 립 기 술 인 회 장

가. 처분내용 : 산림기술용역업 폐업

나. 처분대상업체

분 야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일자	소 재 지	폐업 내역	
					사유	폐업일자

6

유관기관 담당자

유형	기관명	성명 및 직급	연락처	관련업무
행정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송명수 사무관	042-481-4187	산림기술인력
		김영철 주무관	042-481-8816	산림기술인력
		정남림 주무관	042-481-4188	산림기술인력